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40
----------	-------

발의연월일 : 2021. 7. 30.

발 의 자 : 김예지·권명호·김미애  
金炳旭·김선교·김승수  
김 용·배현진·백종현  
신원식·최승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신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등의 표시) ① 식품을 제조·

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중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위한 준비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식품등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